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665418			
등록번호	110111-6654184			
상 호 출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호	학동로6길 11, 3층(는	<u> </u>	
,	2018.03.15 변경 2018.03.22 등기			
공고방법				
	다. 다만, 전산장이 페이지에 공고를 힘	내 또는 그 밖의 부득 할 수 없는 때에는 A	이지(www.medific.co.kr)에 한 투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2019.06.17 변경 2019.06.21 등기
1주의 금액				
발행할 주	· · · · · · · · · · · · · · · · · · ·			
	3,000,00	U T		2019.06.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60,000 주 	금 300,000,000 원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63,000 주 63,000 주	급 315,000,000 원	2018.03.16 변경 2018.03.22 등기
발행주식의		97,368 주	<u> </u>	2019.06.21 변경
상환전환우 상환전환우		63,000 주 34,368 주	금 486,840,000 원	2019.06.21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97,368 주 62,000 조		2019.06.21 경정 2010.06.27 두기
보증구식 상환전환우	선주	63,000 주 34,368 주	금 486,840,000 원	2019.06.27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총수	97,368 주 63,000 주		2019.06.21 변경 2019.06.21 등기
エのココ		05,000 +		2013.00.21 67

665418

· 하기민오 00041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등 기	연 월 일 연 월 일				
상환전환우선주식 	34,	368 주		금 486	,840,00	0 원			6.28 착오 연 경정				
목 적													
1 기가시프로 케바 미 키		•	٥	•	02.20	አ ե ነነ	2020	.04.07	ヒット				
1. 건강식품류 개발 및 제조, 판매, 도.소매업 1. 녹즙기 및 건강보조기구 개발 및 제조판매업					.03.30	삭제 삭제		.04.07					
	7 -11 FI				삭제								
1. 건강에 관한 연구 사업 및 홍보업 1. 의료 의약품 신약개발 및 제조 판매업				<2020.03.30 삭제 2020.04.07 등기 <2020.03.30 삭제 2020.04.07 등기									
1. 의료관광 유치 및 컨설					.03.30	삭제		.04.07					
1. 일반여행업 및 숙박업					.03.30	삭제		.04.07					
1. 요양서비스업				<2020	.03.30	삭제	2020	.04.07	등기>				
1. 농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2020	.03.30	삭제	2020	.04.07					
1.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				<2020	.03.30	삭제		.04.07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디					.03.30	삭제	2020	.04.07					
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별	* *				.03.30	추가		.04.07					
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03.30	추가		.04.07	등기>				
1.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 n.a1			.03.30	추가	2020	.04.07	등기>				
1.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	기술, 신제품 연-	卢개발 및	제조			ラ al	0000	0.4.07	E =1,				
1 개무청구 제제 제구 5	i 피i 스i				.03.30	추가 초기		.04.07					
1. 생물학적 제제 제조 편		. 03 . 30 H. J. all H	추가		.04.07	등기>							
1.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 및 연구목적의 시약,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2020.03.30 추가 2020.04.07 등기>													
1. 의료 의약품 신약개발	민 계지 파메어	I			1 1	추가 추가		.04.07					
1. 건강에 관한 연구 사업			1		.03.30	추가		.04.07					
1. 귀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추가		.04.07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디		,			.03.30	추가		.04.07	등기>				
1. 11 44 6 6		ا (ا ا	- ۱ د د د			1 : 1		.01.01	0 * 1*				
│ │ 사내이사 박형일 681224	•]원에 관	안 사	앙									
2021 년 03 월 31		1 년 04	의	19 Ol	드기								
사내이사 김형기 680603~		1 건 04	± ±	14 근	6/1								
2019 년 06 월 17		9년 06	; 원	21 일	듲기								
사내이사 신동환 590801=:		0 6 00											
2020 년 03 월 30		0 년 04	월	07 일	등기								
감사 이규훈 621113-****			-		····- -		•••••						
2021 년 03 월 31													
대표이사 박형일 681224~							포동	, 주공이	파트)				
대표이사 박형일 681224-													
2018 년 11 월 23	일 주소변경	2018 년	. 11	월 29	일 등	7]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680603-***

2021 년 03 월 31 일 중임 2021 년 04 월 12 일 등기

2019 년 06 월 17 일 취임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사내이사 김준겸 840106-*****

2020 년 03 월 30 일 취임 2020 년 04 월 07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범준 821104-*****

2020 년 03 월 30 일 취임 2020 년 04 월 07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

-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 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 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 건에 대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 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 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 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 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 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우선주

665418

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4. 전화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 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 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 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 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 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 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이하 전환비율이라 함은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수를 말한다)
- 2. 회사의 IPO(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한함)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본 조항의 IPO 공모단가라 함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 KOSDAQ 시장 및 해외주식 시장에서의 공모단가를 의미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타사와 합병 및 주식포괄양수도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합병 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4.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투자자 동의 하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본 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665418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 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 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 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 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 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 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 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 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 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 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665418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 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 년 06 월 05 일 설정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사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2019 년 06 월 17 일 설정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정관 제8조의 주식(보통주식,종류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 2019 년 06 월 17 일 설정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정관 제8조의 주식(보통주식,종류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 2020 년 03 월 30 일 변경 2020 년 04 월 07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665418

< 2019 년 06 월 17 일 설정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할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이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9 년 06 월 17 일 설정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20 년 03 월 30 일 변경 2020 년 04 월 07 일 등기 >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9 년 06 월 17 일 설정 2019 년 06 월 21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8 년 02 월 07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8 년 02 월 07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1시02분19초